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한정애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상 예보 및 특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상현상에 관한 위험을 탐지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운영과 관측된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17424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 나.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특보의 통보대상기관 지정(안 제12조)
-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특보의 통보대상기관을 지정함.
- 다. 국제협력의 대상에 기후변화과학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9조)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의 대상에 기후변화과학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

라. 위탁 가능 업무에서 자료제공 삭제(안 제23조)

「기상법」 개정으로 자료제공이 삭제됨에 따라 위탁 가능 업무에서도 이를 삭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기상레이더 관측망을 구축해야 하고, 기상레이더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기상레이더 부품, 운영기술 및 분석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레이더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활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레이더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한 국방부, 환경부 등 레이더 운영기관과의 협력
2. 레이더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일본, 중국 등 국외 기관과의 협력
3. 레이더 운영기관의 관측자료의 수집·분석 및 배포
4. 레이더 운영기관과의 레이더 기술, 최신 정보 등의 공유
5. 그 밖에 레이더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

운영 및 수집·활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국방부
3. 환경부
4. 국토교통부
5. 해양수산부
6. 그 밖에 기상청장이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으로 인한 재해방지를 위하여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12조제3항(종전의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의3을 제2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련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지정하여야”를 “지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2의2. 산업통상자원부

2의3. 환경부

제13조제1호 중 “제12호”를 “제11호”로, 같은 호 및 제4호 중 “전달하여야”를 각각 “전달해야”로 한다.

제1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등 기후변화과학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증명, 자료제공”을 “증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기상레이더 관측망을 구축해야 하고, 기상레이더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기상레이더 부품, 운영기술 및 분석기술을 개발해야 한다.</u> <u>② 기상청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레이더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활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u> <u>1. 레이더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한 국방부, 환경부 등 레이더 운영기관과의 협력</u> <u>2. 레이더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일본, 중국 등 국외 기관과의 협력</u> <u>3. 레이더 운영기관의 관측자료</u>

제12조(특보의 통보 등) ① (생략)

<신 설>

의 수집·분석 및 배포

4. 레이더 운영기관과의 레이더 기술, 최신 정보 등의 공유

5. 그 밖에 레이더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수집·활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12조(특보의 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국방부

3. 환경부

4. 국토교통부

5. 해양수산부

6. 그 밖에 기상청장이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으로 인한 재해방지를 위하여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2. (생략)

<신설>

<신설>

2의3. (생략)

3. ~ 7. (생략)

③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보
또는 특보해제(이하 이 조에서
“특보등”이라 한다)의 통보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수신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④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보
등을 통보받는 기관은 특보등의
수신에 따른 조치담당자와 특보
등의 수신설비에 대한 관리담당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보
등을 통보받는 기관(항공기상특
보를 통보받는 기관을 제외한
다)이 제3항의 수신절차를 마련
하거나 제4항의 담당자를 지정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상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내용

③-----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산업통상자원부

2의3. 환경부

2의4. (현행 제2호의3과 같음)

3. ~ 7. (현행과 같음)

④-----

----- 마련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⑤-----

----- 지정해야 -----.

⑥-----

----- 제4항-----
----- 제5항-----

----- 통보해야 -----.

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법 제16조제1항에서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제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가 둘 이상의 광역예보구역(예보를 광역적으로 발표하기 위하여 시·도의 경계나 기후학적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에 발표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생략)
3. 삭제
4. 국지적이고 돌발적인 호우 또는 강풍 그 밖에 사람의 생

-----.

제13조(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

-----.

1. ----- 제11호 -----
2. (현행과 같음)
3. -----
4. -----

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기상현상을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9조(국제협력의 대상 등)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신설>

2.·3. (생략)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구분 및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 4의2. (생략)

----- 전달해야 -----
--

제19조(국제협력의 대상 등) -----

-----.

1. (현행과 같음)

1의2.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등 기후변화과학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3. (현행과 같음)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

-----.

-- 고시해야 -----.

1. ~ 4의2. (현행과 같음)

5. 법 제36조에 따른 기상현상 에 관한 <u>증명, 자료제공</u> ② · ③ (생략)	5. ----- ----- <u>증명</u> ② ·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	
연 락 처	(02) 2181 - 0326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연 락 처	(02) 2181 - 0805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연 락 처	(043) 7850 - 5734
기상청 예보정책과	
연 락 처	(02) 2181 - 0502
기상청 기후정책과	
연 락 처	(02) 2181 - 0403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연 락 처	(02) 2181 - 0886